

박형준 / 5월 / 기출GS / 3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	12.5	18	11.5	60	1	2.70%	5	37
562188	15	11.5	18	11.5	56	2	5.41%	4	
562576	13.5	11.5	16	11.5	52.5	3	8.11%	5	
563199	14	12	16	10.5	52.5	3	8.11%	5	
563195	11.5	10.5	17	12	51	5	13.51%	4	
562176	14.5	11	13.5	9.5	48.5	6	16.22%	4	
562320	14.5	10	14	9.5	48	7	18.92%	5	
563528	14	10	16	8	48	7	18.92%	4	
562403	14.5	10.5	13	9.5	47.5	9	24.32%	4	
562508	14	9.5	16	7.5	47	10	27.03%	5	
563002	13.5	9	16.5	6.5	45.5	11	29.73%	5	
563029	12	8.5	17	8	45.5	11	29.73%	4	
562339	13	10	15.5	7	45.5	11	29.73%	5	
563443	13	9.5	15	8	45.5	11	29.73%	5	
563423	13	10	14	7.5	44.5	15	40.54%	5	
562578	13.5	10.5	14	6	44	16	43.24%	5	
563520	14	8	15	7	44	16	43.24%	4	
562397	10.5	10	17.5	5.5	43.5	18	48.65%	4	
562813	13	10	12.5	8	43.5	18	48.65%	4	
562350	13.5	10.5	13	5	42	20	54.05%	5	
562434	11.5	10.5	13.5	6.5	42	20	54.05%	5	
563344	13.5	7	13.5	8	42	20	54.05%	4	
562358	12.5	9.5	14	5.5	41.5	23	62.16%	5	
562227	13	7.5	12.5	8.5	41.5	23	62.16%	5	
562305	13	9.5	10.5	7	40	25	67.57%	5	
562924	13	8.5	12	6.5	40	25	67.57%	4	
563311	12.5	7	14	6	39.5	27	72.97%	5	
562189	10	10	14.5	4.5	39	28	75.68%	3	
562268	12.5	7.5	12	7	39	28	75.68%	4	
562408	5.5	12	15.5	3.5	36.5	30	81.08%	5	
562326	11.5	5.5	12.5	5.5	35	31	83.78%	4	
562342	12.5	7.5	11	4	35	31	83.78%	3	
563441	12	8.5	10.5	3	34	33	89.19%	5	
562207	8	9.5	9.5	6	33	34	91.89%	4	
562354	11	4	11.5	4.5	31	35	94.59%	5	
562783	10	5	9	6	30	36	97.30%	4	
562372	7	6	2.5	4.5	20	37	100.00%	5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3회/1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3회는 2022년 59회 기출문제였습니다. 문제 1번은 특발권, 특허권, 그리고 중복심판청구 관련 논점이 함께 엮인 문제였습니다. 논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으나, 답을 틀리거나, 답안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발명에 관한 권리귀속을 토대로 출원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한 만큼, 발명의 권리귀속을 명확히 대목차로 제시한 답안이 가독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 대상으로 특발권을 포함시켰으므로, 해당 특발권 이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답을 틀린 답안이 일부 있었습니다.</p> <p>갑의 종업원의 발명이라는 점에서 직무발명을 두껍게 작성하신 답안도 일부 있었는데, 이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특발권을 갑이 승계받았다는 부분 하나만으로 직무 발명을 주논점으로 크게 작성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특발권이 아닌 특허권 권리귀속 토대로 침해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특허권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특허권 자체는 여전히 갑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가 아니라는 답은 맞혔으나, 을에게 특허권이 있다는 근거를 작성하신 경우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p> <p>을에 대해서는 판례가 특허권 이전 계약의 효력으로 실시할 권리도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고, 신의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영업양도 관련 판례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을텐데, 이번 기회에 결론만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p>	

(3) 설문 3

설문 3은 우선 심사관의 처분을 예상한 후, 이에 맞춰 알맞은 특허심판을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설문 1에서 무권리자 출원에 의해 거절결정되어야 하는데, 특허결정 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답을 틀린 답안도 꽤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 전 심판이 계속 중에 동일한 후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우선 일사부재리는 후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이 계속중이므로 주논점이 아니고, 따라서 중복심판청구가 주논점입니다. 대부분 잘 찾아주셨으나, 중복심판청구금지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후심판 심결 시 기준 전 심판의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경우를 나눠 작성하신 경우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

3. 소결

앞서 말씀드렸듯 논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답안의 가독성과 사안 포섭에서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답이 틀릴 경우 답안 인상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작성하면서도 어디서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하며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박형준/5월/기출GS/3회/2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2번은 일사부재리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경우 출제될 수 있는 논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1차 때부터 판례가 실시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이므로, 답안 작성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일사부재리의 판단시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판례번호가 대뜸 나와 당황스러웠을 수 있으나, 뒤에 설명이 충분히 붙어 있어, 어느 판례를 말하는 건지 이해를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례의 현출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잘 현출해주셨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163조 단서 규정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각하심결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는 점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 역시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두껍게 작성하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3. 소결</p> <p>일사부재리의 경우 출제된 두가지 논점만 주의하시면 대부분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린 경우나, 전원합의체의 경우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원심의 판단들도 검토해보시며 판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박형준/5월/기출GS/3회/3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3번은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은 특이발명 중에서도 A급으로 찍히는 부분이고 판례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던 만큼,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판례 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과 함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를 단문문제로 이해하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판례들로만 답안을 작성하신 경우가 꽤 있었는데, 문제에서 발명 X가 특허를 받기 위한 판단 기준을 작성하라고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사안을 아예 포섭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행문헌 1, 2에 대한 사실관계도 주어져 있는만큼, 적절한 포섭이 필요했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의 경우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두껍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지 꼼꼼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새로운 투여방법을 부가한 것만으로 곧바로 특허가 부여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의약 투여방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약효 향상, 부작용 감소 등의 현저하거나 이질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발명 Y가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기 위한 논리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섭시에 구체적으로 발명 Y를 통해 부작용 감소, 약효 향상, 편의성 증진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작성해주시는 것이 인상이 좋았습니다.

3. 소결

의약용도발명 역시 논점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친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례의 현출도와 사안포섭에서 답안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혹시라도 판례가 실시하는 바에 대한 오개념이 있으셨던 경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3회/4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4번은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논점이었습니다. 사실 재판상 자백은 민사소송법에서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논점이긴 하나, 심결취소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자백이 가능한 경우를 물었으므로, 판례와 함께 실제 자백이 가능했던 예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문제를 풀었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실만이 자백의 대상이고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만 적은 경우, 자백이 가능한 경우를 물은만큼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2) 설문 2

설문 2의 경우 재판상 자백인지와, 자백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은 만큼, 대목차로 크게 나눠 작성해주신 경우 가장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와 함께 을의 진술 내용과 갑의 감정신청 철회 사실 등을 들어 자백이라는 점을 이끌어주시면 됩니다.

자백 취소의 경우 민사소송법 상 자백 취소 요건을 작성해주셔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민사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주소설정이 안 되어있을 경우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백 취소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포섭 두껍게 작성해주신 경우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

3. 소결

특허법과 상표법 모두 민사소송법과 맞닿는 부분이 존재하는만큼, 4번 문제처럼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뤄져 있으시다면 충분히 방어가 되고 목차 구성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18

문제-

1 실문(1)

1 "이 사건 발명"의 권리 귀속 문제 - 특허종업원

(1) 특 33조 1항 후 의의 취지

강한 권리와 보수를 위해 발명자와 2 손자인에게
인출권은 각각 인정된다

(2) 사안의 정황

이 사건의 발명 과정과 권력권장장이 발수 배신으로 인한
최종 단계의 발명가는 특허 종업원으로 인정 가능하다.

2 甲의 "이 사건 발명" 권리 승계 타당성 (각각)

(1) 甲과 甲의 종업원 계약 완성 (각각)

1) 특 37조 1항 의의 취지

사적 권리 행사상 특권을 발명수 있는 권리로 승계된다

2) 사안의 정황

~~甲과 甲의 종업원은 "이 사건의 발명"에 대하여~~
특권을 발명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2) 甲과 甲의 종업원 간의 권리 승계 타당성 (각각)

1) 특 38조 1항 의의 취지

출원권 승계와 정황 출원권 대항 요건이다

2) 사안의 정황

甲은 甲의 종업원으로 부터 계약이후 출원하지 않았다

리만 이는 개항 요건 이므로 극명하게 승계 하였다

3 乙의 "이 사건의 발명" 권리 승계 여부 (각각)

(1) 명시적 승계 여부 (각각)

1) 영업 양도 관련 체계

특히에 광복 받도록 있는 권리 승계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영업 양도 함께 복사 가능 있고

2) 사안의 경우

부은 乙에게 영업 양도 않는 권리 '이 사건의
발명 "을 특권 대상 으로 명시적 안 이 해당 한다

4 甲 출원의 각부 (소극)

(1) 출원 양도인 체계

출원 특권 양도 관련 체계 에서 출원 관련 특권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법 33조 항 본 및
법 133조 항 제 1 항 제 1 항 이 따라 가 있 다 고 해 설 다 .

(2) 사안의 경우 - 법 33조 항 본 기반

부은 특권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 했 으므로 .
양도 인 으로 甲 출원 시 법 33조 항 본 의 따라 가 있 다 .

5 결론 - 甲의 "이 사건 발명" 출원 부각

甲 이 사건 발명 출원 부 각 한다 . 법 33조 항 본 기 반 에 따 라 .



II 설문(2)

6

1 "이 사건 특허"의 권리 귀속 - 甲

(1) "이 사건 특허"의 ~~권~~ 계약 유효성 (각주)

1) 법 91조 1항 의미 취기

사실 가치 관행상 특허도 이권 가능 하다

2) 사안의 경위

甲과 乙은 일부 영업 양도 계약을 통해 "이 사건의 특허"를 영위하여 계약하므로 이권 귀속하다

(2) "이 사건 특허"의 권리 승계 여부 (소극)

1) 법 101조 1항 소 의미 취기

법복 안정성은 시제 이권 등록은 소극 발생 요건이다

2) 사안의 경위

甲과 乙의 계약이 기술훈과 별개로 乙은 이권 등록 하지 않았으므로 승계인이 아니다

(3) 소결 - "이 사건 특허" 권리 귀속 甲

이권 등록이 없으므로 이사건 특허기 권리 귀속
주체는 甲이라고 할 수 있다.

2 乙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 하는지 여부 (소극)

(1) 乙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자 승양 여부 (소극)

乙은 이권 등록이 없기 권리가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의 권리가 귀속 못한다

(2) 乙이 "이 사건 특허" 실시권 주장 거부 (각각)

1) 권위 이전 관련 제1항

특허권이 이전 계약으로 권위 이전을 하자고 하였
지만 이전 등록이 없는 경우 제1항은 계약
양도인에게 실시권을 인정 하오라

2) 검토 - 法 1183 1항 고령

특허 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바.
양도인이 양도인에게 실시권 허락 행위로 불이 인정하다

3)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계약으로 인해 실시권이 설정 되었지만
본인으로 인해 기존 등록된 주장 거부 하자.

(3) 乙이 甲에게 금반년 주장 거부 (각각)

1) 금반년 관련 제1항

특허권 권위 이전 관련 계약 성립 이후 이전 등록
없이 양도인이 양도인에게 특허권 행위로 모든 권은
행위로 금반년에 반환한다 보았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 특허권 관련 계약을 맺고 이에 기한
권위 행위로 금반년에 반환 하오라기 양도인

3 결론 - 乙의 "이 사건 특허" 실시권 바람에

乙은 실시권 내지 금반년 주장 거부 하자

II 실문(3)

6

1 어떠한 특허심판 청구 해야 하는지 - 무효심판

(1) 무효심판 의의 취지 - 法133조

공익상 하라 있는 특허로 무효 시키는 제도 이다

(2) 적부 - 法133조 1항 끝

法 33조 1항 본 기한이 정된 이래관계인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인 것과 심사만 안 제기가능하다

(3) 분양 - 法 133조 1항 2

출원인 계속 기한이 法33조 1항 본은 특허가

무효 판을 받은 무효 시키는 이다

(4) 소결 - 인용심결 이상

갈려진 특허 결정에 대해 그은 무효심판 할수

있고 法 35조 특허 권리 회복 가능하다

2 특허 심판권 조취

(1) 선형 심판 관련 조취 - 인용 심결

이 제기한 무효 심판에 별다른 하라가

있는 이상 인용 심결 하여야 한다

(2) 후형 심판 관련 문제 - 중부심판 (적부)

1) 중부심판 의의 취지 - 法157조 1항. 민소법259조

심판 정례와 모순 병리를 위해 중부심판 심판이

전부 허용하지 않는 제도 이다



2) 모건

① 동일한 양수라자 ② 동일 실원이 개개미

③ 계속권할 때 레기 개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① C이 ② 甲 특허출원권 "이 사건 발명"에
개하여 특정권 발본기반을 ③ 다나 레기 개야한다.

4) 소결

C이 후행 심판을 통해 심판 개종한다

(3) 후행 심판 관련 권리-판결각하심결

1) 선행 심판 계속 승인 경우 - 각하심결

선행 심판시 계속 승인 경우 공통 심판
해당 시점 각하 심결 이 개종 한다.

2) 선행 심판 취하시 - 불판결

선행 심판 취하하는 경우 심판권을 후행 심판
에 대해 불판결 해야 한다.

3) 선행 심판 취하 - 불판결

일부개리 리유가 안되고 후행심판 불판결
이 필요해 보인다. **인용행위 득권 소멸**

3 결론 - 무효심판 청구 및 후행심판 각하심결

무효심판으로 갈라진 특허권상 제사 권한 후행
심판은 공통 심판으로 각하 심결 요한다



12.5

~~문제-2~~ 문제-2

I 실문(1)

1 문제집 - 일사부대리 · 법 1633

(1) 법 1633 의의 취지

심판 명리나 모든 항리를 위해 본안 심결 확정
등일 심판 제기 하기 불한다

(2) 제수제가 실현 취지

상징 수권기 큰일한 처리를 통해 법적 안정성
을 추구 하는 취지 심결권 보장등을 위한
3차 불이타 항리를 위함이다

(3) 요건

① 본안 심결 확정 이후 ② 등일 심판. ③ 큰일나심
④ 큰일 큰일로 제기 해야 한다.

2 2009 후 2234 판결의 의미

(1) 어떤 9인 관판4점 임기 - 본안 심결 확정시

2009 후 2234는 본안 심결 확정시 관판4점이요

(2) 제수제

[큰일 제수제 문제집 2가지] 이 제가미 공공 심결
을 용락 하고, 제판권은 보장은 받지 못하는 문제이고

[물건채속 상] 본안 심결 확정 이후 다시

큰일한 심판에 제가미 심판권 못한 불이타



[항공 캐시]은 제한 되는 데 바로 일사불립 원칙 때문이고

[결론] 직으로 불일립 원칙은 항공사로 간간 한다

(2) 검토

일사불립에 유예식 9년 제한이 많으므로 이론 고려한
취재가 타당하다

3 2018학 11360 판결의 의미

(1) 어떤 모든 관련 시점 권리 - 동일권, 동일권

2018학 11360 판결은 권원상 동일권 관련 취재이다

(2) 취재

[동일권, 동일권 권리 범위]은 법 140조에 따라
심결 시 까지 부정 가능하므로 심결 시 까지 취해야 함

[2019학 2234 판결의 의미]는 불일립 원칙 항공사로
항공사로 보기를 내용으로 이의 적용 하기 불가

(3) 검토

법 140조 2항 시 해방상 동일권 동일권 여부
심결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판례의 태도 - 모든 업무

[불일립 원칙 시]는 법원 안정성과 관련 보장 항공사

[권원상 동일 권]은 절차권 보장 심결 시로 보므로

이에 모든 업무

II 실문(2)

6.5

1 특/632 소의 의미 취의

(1) 의미

항원인 심결이 강하심결의 경우 일4부 개리
호약을 배제한다

(2) 취의가 실4할 취의

일4부 개리는 궁정결 궁극 봉리를 가함으로 강하
심결 개리 이미 조항 권고 할 수 있다.

2 강하심결로 불능되는 적용 범위

(1) 문례질 - 문리가 부가된 경우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량한 문례를 제출함으로써
본안 심결이 하는 전사 강하 심결 조항 문례조항

(2) 문례 취의

유량한 문례가 제출되었는지 본안 심결을 하는 전사
특/632 소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바고

(3) 최근 취의1) 개본

특/632 소의 기준은 강하심결은 한 경우 일
4부 개리 호약을 제한 하고 있다

2) 배정

기준에 강하심결로 본안심결 달리 많은 것이

대하여 권리행사 시기 입방은 동시 배제 한 것이

3) 공리가 부가 된 경우

공리가 부가 된 경우 일나복 재리 기록은 파악
 하기 위하여 실질의 기록된 수필과 기록된
불사키하게 수필만 듣기에 대해 불합치 한다

4) 공인 해석

법 163조 5항이 공인해석상 각하심판의 경우
 당연히 배제 되기, 불합치 사항이 기재 없다

5) 확장 해석 제한

법 163조 5항은 수필기 발은 확이므로 이를
확장 해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6) 결론

수필을 변용할 수 있는 유권한 듣기자 레를 지양
기 불합치 후 각하 심판해도 여전히 일나복
같이 기록에 따라 후속 배제 된다

[4] 결론

법 163조 3항에 반하지 않고, 확장해석 제한
해석 가능한 위수제가 타당하다

[5] 결론 - 모든 각하심판은 ^{결론} 대상으로 함

법 163조 5항은 유권한 따라 모든 각하 심판은
대상으로 적용한다

18

문제-3

2 실문(1)

3

1. 이항 운동 발생의 구성요소 사례

1) 물리

이항 운동 발생은 물리 발생은 물리를 구성요 가진다

2) 용도

물리에 특정 용도를 부여한 것이 이항운동 발생에
본질 이라고 할 수 있다

2. 양의 기관의 구성요소로 의미 체계

(1) 양의 기관의 의미

양의 기관은 불변이 운동 발체하는 기관의 설명이다.

(2) 양의 기관 사례비 구성요소 목적

양의 기관은 2사례로 구성요소 목적이 없이 양의 기관
한정 결과는 특정 형이상 불의 행라

(3) 용도 한정으로 의미

양의 기관은 이항 운동을 한정하는 것으로 2-
의미를 가지며, 이항 운동은 특정하기 위해 쓰인다

(4) 양의 기관이 널리 알려진 경우

양의 기관이 널리 알려진 경우 용도를 대신하여
용도를 특정하기 위하여 쓰이기로 한다.

II 실문(2)

6

1 음계림 - :법29조2항. 관행.

특허 발명은 기술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의 발명으로
부여 할게 실시 하기 위하여 만들어야 하는 것임. 이를 살핀다

2 발명 X가 이익을 얻는 발명 여부 (각각)

발명 X는 백열전 램프의 양극각각 "코실"에 대한
개량형 기호 "우로" 가린 이익을 얻는 발명이다

3 이익을 얻는 발명 인정 관한 방법(1) 효과 예측 방식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공리된 경우 그에 대한 효과
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관행에

(2) 효과 확인 불요 방식

이익을 얻는 발명기 인정을 산정하는 알리 개량 발명
의 각각의 효과 확인은 불요하다고 하겠다

4 결합 발명 인정 관한 방법 방식

결합 발명이 경우 각각의 발명기 각각으로 관행

하리 신기술 발명이 개개 발명보다 낫는지

신기술 발명이 낫지 않다면 있으니 관행한다

사후적 고찰 하면 안된다

5 사안의 경우

(1) 선행발명 1 내용 - 동기, 양식

선행 발명 1은 발명 X에 "기장병 선택적 억제" 관련 하위 효과를 충양할 수 없기만 예측 가능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선행발명 2 - 효과 예측 자료

선행발명 2는 기장병 증양에 부정적인 불충족한 여러 개로 분별적 관련지음으로 제기 해 기장병 치료 용도로 예측 가능하게 한다

(3) 치료 효과 확인 여부 (소극)

선행발명 1 과 2는 기장병을 긍정적으로 치료 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4) 쉽게 실시 가능 (주극)

선행발명 1 의 동기 양식와 선행발명 2 의 효과예측에 관련 자료는 아름하게 기장병 치료 용도로 쉽게 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 사후적 고찰 고려시

사후적 고찰을 고려 해오 대관치 쉽게 실시 가능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 진보성 부정, 치료효과 확인 불

발명 X는 치료 효과 확인 임에도 진보성 부정 판단

IV 실문(3)

1 특허용법과 특허용량이 별명 구성으로 식별 (각각)

(1) 원래 취사제

특허용법과 특허용량이 특이한 경우 용도로 한정될 뿐
별로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

(2) 전함 다수의 점 취사제 - 식각 인경.

이 약물의 별명 별칭을 문구에 기재하여 특허용법과
특허용량은 이른 개별처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
과 과보증을 고려하여, 슬롯을 한정하는 것으로
구성요소로 의 식각을 인정하나 있다.

(3) 전함 소의견 취사제 - 식각 부형

특허용법과 특허용법이 별칭은 용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면 막대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용도 한정
하는 권리의 의미는 가진다고 했다.

(4) 점포.

기술 분야 특성상 용도가 중화되고 할 경우에 특허
용법과 특허용법이 개라 별칭은 용도와 같아도
로 명 오스 각각 있다고 볼 수 있다.

(5) 소질 - 구성요 각각 인정

특허용법과 특허용량은 별명 구성으로 식별이 있다.

2 새로운 기약물도 특이 특허 인정 거부 (제한적 각주)

(1) 새로운 의약용료 부가만으로 특허 불인정 체계

새로운 의약용료 부가뿐만 아니라 사실만으로 특허로 인정하게 할 수 없다.

(2) 의약용료 부가로 특허 인정 받기 위한 요건 체계

의약용료 부가로 기술분야에 공진으로 고려 하여 부가된 문으로 인한 기술자체의 이질적 효과나 효과에 대한 개선 되는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질요 - 신규성, 진보성 관련 필요.

새로운 의약용료 부가는 관련된 부가된 범위에서 일별 별과 다른 가치로 신규성 진보성 관련 요건

(4) 소결 - 별도 관련 필요

의약용료 부가후 현저한 효과를 특이한 작용 효과

IV 실문(4)



1. 총례질 - 진보성, 신규성 2항

의약 특허 용법 별명기 기술분야 공진으로 인한 진보성 유무로 판단해 본다.

2. ^{특이}발명 추가 의약 특허 용법 별명 여부 (적극)

발명 주는 백혈병 특허를 경피 용법을 통해 문으로 개량한 의약 특허 용법 별명기



문 제-4

I 실문 (1)

3 11.5

1 문리검 - 심결 확보형 권리법1062

심결 확보 소액 제하여 과백의 소외 권리
가능 한기가 문제 된다.

2 준용규정 - 행정소송법 62 조항

심결 확보 소액 행정소송법 62 조항 준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3 변론규리 적용 거부 배제

민사소송 법은 원칙적으로 준용하는 이상 변론규리
를 적용하기 위해 가능하다 .

4 과백 거부 배제

심결 확보 소액 심결은 변론규리를 기본으로 하는
이상 과백 또한 가능하다

5 과백 불인정한 경우 배제

① 특히 불응에 권보실행처인이 있을지 여부 및

② 권리 범위 부분은 사실심 관련 사항이라고
한다



6. 과백이 가능한 경우 배상액

특히 불명이 이러한 구성요로 되었는지 ③ 권리
되었는지 ③ 권리를 인의 문은 과백으로 가능하다고
한바 있다

II 실문(2) 8.5

1. 재판상 과백 성립 여부 (직극)

(1) 재판상 과백의 의미 및 요건

재판상 과백은 변론 기일에 변론으로 공판부 구성
과 일치하고 과기에 불리한 구도4설에 관한
권으로 과잉심증 구도를 제한한다

(2) 구성요소를 인정하는 것이 구도4설 여부 배상액

주요사실이란 법규 기준설에 따라 법원 후과로
발생 시점은 원에 제정하는 사실은 의미 하는데
구성요소 즉 특히 불명의 권에 제정 하는
사실은 권위 범위 용도에 대한 법률 효과는 발
생 시점을 모든 사실에 제정 한다고 했다.

(3) 사안의 경우

[주요사실]로 구성 C의 구성요소 임을 인정하고
[일치된 사실]로 A의 감정 인정 구도와 일치하고 있다
[불리한 사실]로 구성 C의 구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도 인정에 5할이 시 개조 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적으로 존은 권으로 그에 대한 과백했다

(4) 소결 - 과백의 논점

과백의 논점으로 당사자와 법원은 과백의 내용에
이 구속된다

2 과백 취소 가부 (소주)

(1) 과백 취소 방식 (각급)

과백은 명시적으로 범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 취소 가능 하다, 사망은 존이
명시적으로 과백을 취소 하고 있다

(2) 과백 철회 제한

이후로 소용 행하는 실차 양과라 상대명 신키
별로 시켜 철회 제한된다. 존의 과백 철회는
제한 되어 있다

(3) 과백 철회 제한의 예외 사유

[대심사위 5호] 형사 처벌 받은 다른 사람의 행
으로 인하여 의사자 권리 부존하게 미관 형성오항의

[학오 필 방위설] 강사가 학오와 실제적 권
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음역회에 철회 가능치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 동의 은로 권리 철회
자음 하라, 이케는 레기하기 안양하는 사실은 부러

[정권권] 민사 소송법 94조에 기해 정권권 행사 가능



(4) 예외 사유 중 창조와 반권실의 경우. (소극)

1) 관련 체계

특정도에 관한 강령 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수정요임을 인정하기 곤란 경우, 과백 청구 할만한
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하리라고 반권실시
가능하지 않은 것

2) 사양서 경우

[창조] 여부 상 이해 강령 신청 결과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특정 임의 인정 어렵고
[반권실] 에도 반반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결] 청취 제한된다.

(5) 다른 예외 사유의 경우 (소극)

[개방사유 5호] 는 甲이 청사 회보등이 없고
[상대방 2호] 는 甲은 권리 법에 속하는 주관적이고
[정관권] 은 乙이 개리인으로 소권 행사경 없다
[소결] 로 乙은 청취 제한 예외 사유가 없다.

(6) 소결 - 乙 과백 취소 불가

乙은 청취 제한 예외 사유가 없음으로 乙의 과
백을 취소 할 수 없다.

3 결론 - 침해성 인용 관할 대상.

분류상관 기작을 권리 남용 아니요. 과백으로 권리 법에 속해 인용에 해당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1>

135

I. 선택 번

1. 원사적 권리 취득 문제 - 甲의 권리

(1) 법 33조 함 뜻

법 23 조 함 각목을 산하여 전항에게 특한 발명이야 한다.

(3) 발명배상금의 청구

甲이 발명배상금을 청구 받았을 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2) 발명의 의미 (제1항)

발명을 한 자로 기술상의 공백이 상당한 기여한 자를 의미한다.

(4) 특허권자의 청구

甲의 공업권이 발명권자인 甲에게 특허를 받은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5) 선점

원사적 권리 취득주체는 甲이다.

2. 특허권 이전 가부 (꼭)

(1) 법 99조 함

특허권은 재산권인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2) 사안

특허권을 지게 이전했다.

3. 특허권이 적법한지

(1) 무권리자 출원인지 (사실)

특허권을 이전계약을 통해 양수인사기 이전 선구
양도인은 ~~타인 권리취득주체가 아니므로 양도인의
출원은 제 33조 1항 2호를 위반한 바 없다.~~

(2) 사안

특수 지게 이전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이전한 바
특수 계약상 "권리취득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특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이 해당한다.

4. 결론

특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을 결론은 "부적법"하다



II. 설문 2번

1. 주이 특허권자인지 (특)

(1) 법 103 1항

특허권을 계약상 통여 아인한 경우 특수한 발명인이다

(2) 사안

주은 아인받은 후 특허권 이인등록을 하지 않은바 "특수"이 발명인이 특허권자이 책임이 없다

2. 주이 침해한 것인지

(1) 법 94조

유리한 특허권의 보안을 내기에 입찰이 실시하는 경우 발명권이 없다나 특수에 반대 입찰나 권리 상충 아니라 면 침해이 책임이 없다

(2) 주이 실시권자인지 (특)

(1) 사례

양도계약 아후 양도인이 이인등록을 하지 않은 바 당초 양도인은 "실시할 권이 권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하 리도 특허 권의 침해이 책임이 없다."

2) 사안

- ① ~~그는~~ ~~부인~~ ~~이혼계약~~ ~~중~~ ~~특허권~~ ~~이전~~ ~~받았다~~
- ② ~~대신~~ ~~그~~ ~~특허권~~ ~~이혼~~ ~~이후~~ ~~등록~~ ~~한~~ ~~것이~~ ~~있었다~~
- ③ ~~부~~ ~~의~~ ~~재산~~ ~~중~~ ~~이~~ ~~이혼~~ ~~계약~~ ~~후~~ ~~실적~~ ~~을~~ ~~시커~~
~~며~~ ~~가~~ ~~권~~ ~~을~~ ~~취~~ ~~할~~ ~~것~~ ~~으로~~ ~~그~~ ~~의~~ ~~가~~ ~~치~~ ~~는~~ ~~상~~ ~~사~~ ~~권~~ ~~리~~ ~~이~~
- ④ ~~그~~ ~~의~~ ~~상~~ ~~사~~ ~~는~~ ~~국~~ ~~법~~ ~~하~~ ~~에~~ ~~부~~ ~~의~~ ~~특~~ ~~허~~ ~~권~~ ~~을~~ ~~상~~ ~~회~~ ~~하~~ ~~지~~
~~않~~ ~~다~~.

(3) 소결

그는 상사권리 이므로 그 의 상 사 는 부 의 특 허 권 을 상 회 하 지 않 는 것이 사 실

3. 결론

그 의 가 치 는 상 사 권 리 이 므로 그 의 상 사 는 국 법 하 에 부 의 특 허 권 을 상 회 하 지 않 는 다.

II.

선출 3번

4.5

1. 무연심판은 청구권이 타함 (23)

(1) 무연심판 타함, 청구 (1332)

(공상) 타함 앞 특자를 선출사실 심판야.

(2) 정복 - 이의신청이 (4111)

① 특허권의 권리주체로 인해 법원심 불복할 권리 가리 타함
이의신청이라고 하고 ② 특허심사원은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1332 18)

(3) 무연사유 - 부원외의 출원

특정 수의 계약의 이행으로 타함 권리주체가
다른 바 타함 출원은 부원외출원이 해당한다

(4) 선출

특허심사원 무연심판은 청구권이 타함

2. 일사부재리 원칙 (23)

양 ↓

(1) 타함, 청구 (1332)

(선출의 타함, 타함을 방위 기에 동일심판, 동원사,
동원청을 이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불안정 판결 (4111)

국민의 재산을 권리를 타함에 위하여 심판을
청구한 법원의 판결의 무효를 방위 기에
1332 문에 따라 타함에 청구할 수

근으로 심판자를 기근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동일성, 동일성 판단성 (외국)

① 본인으로서 심판자를 받거나 받은 대세료로 인해
제과와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② 심판의 효력을 심판까지 보충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 202 조) ① 심판자를 기근으로 보충된
사실, 증거를 기근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소결

본인으로서 행방이 없거나 바가지로 기판이 없다.

3. 중복심판 기판부 (중복) 이거

(1) 특허법 제 202 조

심판의 효력,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제적 후 동일한
심판은 관할할 수 없다

(2) 심판 제적 중 판단성 (외국)

당사자에게 판단성 변함은 "대세료"로 인해 제과와
권리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중복심판제적
당사자에게는 위와 같은 인부 동일성이 아닌 "본인이 다른
바" 중복심판제적은 여전히 심판자를 기근으로 판단
해야 한다

(3) 사안

가항심판을 해야 한다.



(문제-2)

11.5

I. 선택 1번

5.5

1. 농어-양식업법 (제1632)

상업적 목적,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동일성판, 동작성, 동작성을 이유로 한 수 있는 바 판정방법 리어가 존재한다

2. 2009년 234 조항법회 판결 판례

(1) 요지

국인의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제한하는 상업적 목적 법원의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제1632 문헌작성 고도해 해석하는 것은 국인의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제한하는 본인작성 목적성을 상업적 목적로 인정한다.

(2) 결론

① 국인의 재판청구권이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국인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인 점 및 상업적 목적에 의해 부여 법원의 판정방법을 무디하게 만든 것은 중요 헌법적 가치가 타당하다.

(3) 선결

상업적 목적을 이유로 본인작성 목적성을 판정방법으로 한다.



3. 2018년 11360 판결 판례정리

(1) 침해

① 심판의 취지의 변경은 불가능하나 관의 범용성
가능하므로 (법 14조 2항 상사적 기준)
행정 절차의 취지를 이유로 판단할 수 없다

② 전합합체계를 통해 ~~판례정리~~ 행정위 이니
"2차원" 인바 2차원 관리체계를 3차원하 기함
이므로 동일 사실, 관의 판례정리는 전합합체
판례와 다르게 여전히 상사적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

(2) 권고

법 14조 2항에 비추어 관의 상사적 범용성
가능하므로 "상사적 기준을 동일한 말 동일
취지부를 판단 침해가 타당하다

(3) 권고

상사적 기준을 동일사실, 취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4 판례

두 침해 모두 적법하다.



I. 실문 2번

6

1. 특정 - 法 1632 연사

특정심권이 각하심권이 중의 일사부리가 적용되지 않는바
각하심권의 일사부리 판단여부가 불확실하다

2. 각하심권으로 불수 및 적용방법

(1) 각하의 경

과거에는 각하심권이 대해 일사부리 적용여부까지
다툼이 존재했지만 法 1632 연사를 신설함으로
각하심권은 일사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동일권의 의미 (제131조)

일사부리의 한 층 개념인 동일권은 중복된 2
차례 뿐만 아니라 동일권에서 특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절차가 부여된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3) 불안이 생길 경우 (제131조)

특정심권을 변경할 수 없게 하기 위해 판례상으로
"불안정성이 생길 우려가 발생한다"

(4) 불안정처럼 해석 불가 (제131조)

불안정처럼 등에 각하심권이 나온 것과 불안정 생길
것과 같이 비슷한 각하심권을 동일권에 보는 것은
"불안정처럼 해석 가능한 방식을 넘어서는 해석"이므로 불안정처럼
동일권에 판단하면 안된다.



(5) 소결 (尙結)

등용어인 판단하기 위해 특정사항을 변형할 수 있을
만큼 유관한 측면의 판단은 허용되어 본인판단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각사항을 변형하지도 일부러
이 지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6) 검토

~~법 63~~로 취하는 성격이 맞, 지극을 보여 주어
동일성, 동일성, 동일성을 이따로 삼단 관할 수
없음이므로 본인판단을 할 수 없는 각사항을 본인판
단 동일성 해석 한 본인판단을 통제 가능한 지극
해석이므로 尙結가 타당하다. 흥미 신 여기 가
관계 가 연관 성 있는 것이다.

3 결론

① ~~법 65~~ 판단 하기 위 해 각 사항 은 일부러 지극 이 없
는 이 판 단 이 유 관 한 지 극 사항 의 특 정 사 실 은 본 인 판 단 과
같은 판 단 을 할 수 있다. 각 사항 을 변 형 하 지 도 일 부 러
이 판 단 을 할 수 없
다.

(끝)

<문제-3>

J. 셋 번

3

1b

1. 의약품의 발명 의미

의약이 가진 발명성으로 신약성 이용가능성을 가진 발명시 해당된다.

2. 구입성 (실패)

의약품의 발명 구입성을 물론인 것이 아닌 의약품이 해당된다.

3. 약제법이 구입성 의미를 가지는 것

(1) 실패

약제법은 물론인 의약품의 구입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의 불가분적으로 내부된 속성으로 따라

약제법은 "구입성 증명하는 한도내에서만 구입성으로"

의미를 가진 발명 약제법 과제가 구입성으로 의미를

가지는 않는다.

(2) 사안

특히 발명 X가 가진 물론인 의약품의 구입성을 증명하는

한도내에서만 구입성으로 의미를 가진다.



II. 섯 권

5.5

1. 농업-권보장 (제 29조 2항)

기술적인 측면 외에 공익성을 충분히 충족시킨
안건에 대한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2. 의약품특허권 보장의 판단기준(1) 일반적 권보장 판단방법 (제 31조)

주요의 공익적 이익이 없는 경우 특허권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2) 의약품특허권 보장의 판단방법 (제 31조)

특허권의 기술적 공익적 이익이 없는 경우 "공익적 이익"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

3. 의료용이나 특이한 용도로의 사용 (제 31조)

특허권의 기술적 공익적 이익이 없는 경우 특허권 보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충족"된 경우 권보장이 인정되고 다른 양상에서는
특수 의료용이나 특이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4. 결핵예방 (제 31조)

여러 선형문제를 포함하는 "양식, 용기" 선형문제를 제시
되어 있으며 권보장이 가능함을 통해 가용성,
가급적 리제, 발견방법, 용기의 사용 비특허

선형방정식의 결합이 용한 기법이다.

5. 사인

(1) 암시, 풀이 순서

① 선형방정식 1개 위임방식 선택후 위임하면 X의 식이
A 형태가 되어 "X의 값을 찾기"를

② 선형방정식 2개 X가 위임방식 풀이 가능한 위임방식
"중요한 위임" 하다는 것은 풀이 방법을 "암시"로
사서된 바 있다.

(2) 위임방식 식의 풀이

선형방정식 1, 2개 위임방식 식의 풀이 방법을
위의 방정식 X를 위임방식 식의 풀이

(3) 용한 기법

용한 기법이란 선형방정식 1, 2개 풀이 "중요한 위임"
같은 것이므로 위임하는 용법이 용한 기법이다
위임된다.

6. 결론

① 위임방식 식의 풀이 위임된다 ② 위임하는 용한 기법
위임된다

II. 선택 3번

1. 특허방법, 특허양도 규정인의

(1) 사례

계약으로 받거나 새로운 특허방법, 특허양도를 부가한 것
 "새로운 발명"을 부가한 것이고 새로운 발명을 받은
 것이 부가한 것은 새로운 발명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특허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특허방법, 특허양도를 부가한
 물건에 대해 판단하여 새로운 발명을 부여받은 것은
 판단해야 하므로 특허방법, 특허양도 규정인의
 해명한다.

(2) 사실

발명 등이 새로운 특허방법인 것은 권리특허 방법
 시행한 것은 "새로운 발명"을 부가한 것은
 발명 등의 규정인 해명한다.

2. 새로운 발명이 부가되면 특허권은 있는가

(1) 사례

새로운 발명이 부가되면 곧바로 특허를 받을
 것이 아니라 "특허대상"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

(2) 사인

특히 일명 X이 권리특어라는 사인 계약용기 부
 된 항 그 외제를 특허법상 부여받은 권
 아므로 신성, 권양등 다른 특허권을 침해
한다.

IV. 실용 수반

3.5

1. 권양 양행 표(1) 계약용기 표 (제1회)

계약용기가는 사인 표, 더 신 표를 표
 위해 노력 표 표이므로 사인 표, 표
침해 한다.

(2) 권양 표 (제1회)

계약용기명 권양 표가 표 표인 표
표 표 표 "권양 표" 표 표.

(3) 권양 표 표 표 (제1회)

계약용기명 권양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사인(1) 권양 표 표

특허의 발명은 절대특이성을 갖지 못한다면, 2년간
 10년간에 걸쳐 인간에 의해 특박할 수 없으므로
"현저한 효과를 가한다.

(2) 구성의 변경 가능

따라서 현저한 효과 안 이 특허 발명 은 적
당성이 부족하다.

(3) 소

발명 은 권한 안정한.

<끝>

<문제-4>

11.5

I. 섯 번

3.5

1. 형 - 상벌규정 (법 186)

살인범은 큰가를 뺑뺑이 가며 특히법원시 상의
큰를 구한 승으로 변종적이 적용하는
문제된다

2. 형량소방법 80 적용

형량소방법 80이 따라 변종법 70은 문헌이다

3. 변종규 적용

(1) 여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형의 위험성, 과반의 투표, 증거를
확증할 부과하여 법원은 여의 경우로 판단하여
사형과도 소방법인 적용이다

(2) 적용방위 (제131)

적용방위는 주연사형이 아니라 주연의 판정기준
법기판시 따라 법률과 실체법상 정당한 하형
사형을 의미한다. 방위는

(3) 자백 가능한 경우 (제132)

과반은 사형이 아니라 사형에 대한 법규판정
UP의 정하는 과반의 여담이 되기 된다



(4) 사인

실은 II까지 편입된 바와 같이 어떤 권리만을 부여하는
사실이므로 과반이 가능하다.

II. 실은 2번. 8

1. 과반의 과반의 (적용)

(1) 의의, 취지 (판사총합 2882)

과거 권익침해에 대해 과반에 대한 권리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원

- ① 변론이나 변론비기일시
- ② 상대방의 권리 침해
- ③ 불안
- ④ 권리침해를 구경해야 한다.

(3) 자신의 이익 (판례)

과반은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한 법률판단 때
동한 과반을 할 수 있다.

(4) 어떤 권리를 부여가 과반의 (판례)

과거가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 시점에서야 하더라도 "어떤 권리를 부여"는
은 의미가 사실상의 사실에 대한 법률판단의 권리가
불가능하다.

(5) 사인

이 권리를 중 과반 과다 특기발명 제



구입을 받을 제라야라 나머지 구입을 할 때
할 때는 관습 "사실" 이므로 권리 관습 외에는
해당한다.

2. 특허가능성의 (특)

(1) 객관적 특허

객관적 특허는 상업적으로 법적으로 구체적 특허
가능하다.

(2) 특허 가능 여부

① 법 제 10 항 5 번 에 제 정 하 는 특 허 상 특 허 를
타인의 권리로 객관적 특허 ② 상업적 "이익"을
발생 할 ③ 특 허 ④ 매 인 경 우 에
특허 객 관 특 허 가 가 능 하 다.

(3) 상업적 이익 관련 예 외

명사 권 의 동 의 판 단 은 상 업 적 이 익 과
연 관 한 것 이 다.

(4) 사안

1) 특허 특 허 성 질 의 특 성

특허 제 의 관 의 동 의 바 에 따 라 서 동 의 연
관 한 것 이 다.

2) 특허 성 질 의 특 성

제 의 관 의 동 의 바 에 따 라 서 동 의 연

B를 제외한 나머지 동 개된 것 관하여
 B의 경우 C의 경우 양자 모두 관하여 양자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양자 관 수 있다.

3) 소결

과잉사유 및 예외가 부수적으로 주어 제 9항
 변리인사시 구경 (의 관할 반복하여 과잉
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결론

① 과잉성 과잉성 없음하고 ② 부수성 없음.

<끝>

과잉성!

